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5
----------	------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변경함
-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관을 “전설교통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치수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함 (안 제6조)
- 다. 2005.7.1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그리고 간사는 “치수관리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제3호)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5호중 “서울특별시종로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종로구 금고”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로 한다.

제6조1항제1호중 “건설교통국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치수관리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중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제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감사담당관”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치수 담당주사”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하는 <u>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 1.~4. (생략) 5. <u>서울특별시종로구</u>(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영 제32조 제2항 각호의 시설 정비 사항 6.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u>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출납 및 보관은 <u>지방재정법</u>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종로구 금고</u>로 하되,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 총액의 100분의30이상 금액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조(목적) -----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u>----- -----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u>서울특별시 종로구</u>----- ----- 6.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 ----- ----- ②----- 「<u>지방재정법</u>」----- ----- <u>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u>----- ----- -----

현행	개정안
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 ----- ----- -----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
1. 기금운용관 : <u>건설교통국장</u>	1. ----- : <u>재난안전관리과장</u>
2. 기금출납원 : <u>치수관리담당주사</u>	2. ----- : <u>재난관리담당주사</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u>서울특별시종로구 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u>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u>감사담당관</u>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으로 한다.	③----- ----- ----- <u>재난안전관리과장</u> -----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치수담당주사</u> 가 되고,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 <u>재난관리담당주사</u> ----- ----- -----.